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구자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86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13.

발 의 자 : 구자근 · 강승규 · 김선교
강대식 · 최수진 · 박준태
정동만 · 김위상 · 박덕흠
이만희 · 정점식 · 김도읍
강명구 · 박성민 의원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소상공인의 대출 상환금 연체율이 상승하고 폐업이 증가하는 등 부실 소상공인이 증가할 우려가 큼에도 현행 관련 정부 시책은 경영상 부실이 상당 부분 진행되거나 이미 폐업한 이후의 소상공인에 대한 사후적 지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향후 부실 우려가 큰 소상공인에 대한 적기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움.

이에 더하여 부실 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진단, 폐업 및 취업 지원, 채무조정 등의 지원제도가 여러 기관에서 분절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개별 소상공인 입장에서 본인에게 맞는 지원 정책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정책 집행 체계가 효율적이지 않음.

이에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은행으로 하여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부실 우려 소상공인을 조기에 선별하여 관련 정부 시책

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부실 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, 해당 지원 시책이 상호간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간 협력할 의무를 부여하여 부실 우려가 큰 소상공인 소상공인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9조의2 신설).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부실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) ① 정부는 경영이 부실하거나 그러할 징후가 있는 소상공인(이하 이 조에서 “부실우려 소상공인”이라 한다)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부실우려 소상공인을 선별하여 경영 부실 추이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지원 시책을 안내할 수 있다.

1.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2.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9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
3. 「은행법」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
4. 그 밖에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등을 수행하는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

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은 제2항에 따른 선별 및 안내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수집한 신용정보를

이용할 수 있다.

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부실우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또는 폐업·재기·취업·복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소관 분야의 각종 시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상호간 협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9조의2(부실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) ① 정부는 경영이 부실하거나 그러할 징후가 있는 소상공인(이하 이 조에서 “부실우려 소상공인”이라 한다)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 <u>②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부실우려 소상공인을 선별하여 경영 부실 추이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지원 시책을 안내할 수 있다.</u> <u>1.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</u> <u>2.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9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</u> <u>3. 「은행법」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</u> <u>4. 그 밖에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등을 수행하는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</u> <u>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은</u>

제2항에 따른 선별 및 안내가
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
하기 위하여 「신용정보의 이용
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「개
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수집한
신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.

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
공공기관의 장은 부실우려 소상공
인의 경영안정 또는 폐업·재
기·취업·복지 등을 체계적으
로 지원하기 위하여 소관 분야
의 각종 시책이 연계될 수 있도
록 상호간 협력하여야 한다.